

제 2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3.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3월 7일
전문위원 권 오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3 - 41
- 나. 발 의 자: 박주선 의원 외 12명
- 다. 발의일자: 2023년 2월 24일
- 라. 회부일자: 2023년 2월 27일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50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탄소중립의 총칙 (안 제1조 ~ 제7조)
- 나. 탄소중립의 이행 목표 및 계획 (안 제8조 ~ 제11조)

-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 ~ 제17조)
- 라. 온실가스 감축 시책 (안 제18조 ~ 제25조)
- 마. 기후위기 적응 시책 (안 제26조, 제27조)
-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안 제28조 ~ 제34조)
- 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의 폐지 (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 다. 해당부서: 녹색환경과
- 라. 기 타: 입법예고(2023. 2. 27. ~ 3. 6.)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021. 9. 24.) 및 시행(2022. 9. 25.)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제정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기본원칙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제4조)
	- 사업자의 책무 (제5조)
	-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8조)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 공표 등 (제10조)
	- 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 (제11조)
제3장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 위원회의 기능 (제13조)
	- 위원의 해촉 (제14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
	- 회의 (제16조)
	- 수당 등 (제17조)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8조)
	- 순환경제의 활성화 (제19조)
	- 신·재생에너지 전환 (제20조)
	-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21조)
	- 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2조)
	- 탄소흡수원 등 확대 (제23조)
	-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24조)
	-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제25조)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제26조)
	-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27조)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 구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제28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29조)
	-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제30조)
	- 재정지원 등 (제31조)
	- 포상 (제32조)
	-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33조)
부칙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의 폐지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제1장 총칙 [안 제1조 ~ 안 제7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과정에 기후정의 원칙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¹⁾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음

■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안 제8조 ~ 안 제11조]

- 안 제8조에서는 탄소중립비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²⁾를 명시하였고
-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공표, 추진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안 제12조 ~ 안 제17조]

- 안 제12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³⁾을 규정하였음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준용

2)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만큼 감축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심의·의결 사항),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수당 등

■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안 제18조 ~ 안 제25조]

- 안 제18조에서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준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9조에서 안 제25조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을 구체화하였음

조	제 목	내 용
안 제19조	순환경제의 활성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 최소화
안 제2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공공기반시설물(도로·교통 등)과 다중이용시설물(운동장·체육시설·문화시설 등)에 대한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 촉진
안 제21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확대
안 제22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안 제23조	탄소흡수원 등 확대	탄소흡수원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
안 제24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
안 제25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추진

■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안 제26조 ~ 안 제27조]

- 안 제26조와 안 제27조에서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및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안 제28조 ~ 안 제34조]

- 안 제29조에서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및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30조에서 안 제32조에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 포상을 명시함
- 안 제33조와 안 제34조에서는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부구청장 또는 소관 국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부칙에서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고
-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1월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에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중립⁴⁾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음

4) 탄소중립(carbon neutral):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 즉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다.

[출처: 두산백과]

-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021. 9. 24)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까지 시행(2022. 12. 30.)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될 수 있었음
- 이렇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자체 단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우리 구 환경과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델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앞으로의 기후위기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준비와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중장기별 목표가 적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 아울러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어느 한 부문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후위기 취약계층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국민 일상에서 시작된 관심⁶⁾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다각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기후변화 취약계층(14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 2020년 기준: 우리구 전체 인구 580,185명 중 226,916명으로 39.1% [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

6) 기후변화 대응 인식조사 중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문제 관심도

구분	관심없음	보통	관심있음	무응답
빈도	100	316	604	14
비율(%)	9.7	30.6	58.4	1.4

[출처: 2050 강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

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저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7.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 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

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일 : 2022. 1. 1.] 제69조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